

중국의 향후 세제정책 방향

1. 개요

□ 중국정부가 IT산업 육성 등 산업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해 세제정책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중국은 1994년 세제개혁 이후 하이테크 기업에 필요한 세금 우대정책을 실시하였으나, 최근 산업구조조정 및 경제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음.

2. 세제정책 조정안 내용

□ 연구개발 장려

- 하이테크기업의 연구개발 적극성을 유도하고 기술개발과 창업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술개발준비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임.
- o 수입 총액의 3%(기술집약형 산업은 4%, 생산제 산업은 5%)를 기술개발준비금 명목으로 보유하고 3년내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인데, 주로 기술개발, 도입 기술의 실용화, 기술정보 및 교육, 설비도입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임.
- o 기간내 사용하지 못한 자금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규정도 포함됨.
- 기술 및 교육·개발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도 검토하고 있음.
- o 국무원은 작년 6월 소프트웨어 기업의 직원 교육비용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한 바 있으나 적용범위가 협소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 o 따라서 위탁을 통한 기술개발비용, 인재개발비용 등 공제 범위를 확대할 방침

임. 특히 ▲과세연도 기술 및 인재개발 총지출 금액의 5%(중소기업은 15%)에 대해 세금 공제, ▲과세연도 2년 전부터 현재까지 기술 및 인재개발비용 증분의 50%에 대해 세금 공제 등의 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음.

- 연구 실험용 설비 투자에 대한 세금 공제 및 감면을 검토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연구 실험용 설비 투자액의 5%(국산 기자재는 10%)에 대해 세금 공제, ▲연구 실험용 설비 구매가격의 50%(국산 기자재는 70%)를 보전해 주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음.
- 이 밖에도 ▲학술연구용품의 수입관세 감면, ▲하이테크 산업에도 신규 증치세법 적용, ▲하이테크 기업 생산품 판매의 표준화 실시, ▲기업 부속 연구소 사용 부동산의 지방세 감면 등이 검토되고 있음.

□ 기술성과의 상용화 지원

- 기술특허 수입 등 기술이전에 따른 소득세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중국인의 경우 전액 감면해주고 외국인의 경우 일부를 면제해주는 것임. 특히 중국 국내에서 개발, 외국에 이전한 기술 특허 소득의 경우에도 전액 면제를 추진.
- 기업, 개인, 공무원, 외국인 등의 기술특허 개발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함.
 - o 특히 하이테크 기업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세수 우대정책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내국민 대우 규정에 따라 국내외 기업의 차별이 없는 소득세 우대정책을 실시할 예정임.
- 하이테크 기술의 상업화 자금 투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공제해주거나 일부 금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임.
 - o 구체적으로는 ▲투자금액의 3%(국산 기자재 10%)내에서 세금을 공제해주거나, ▲구매가격의 30%(국산 기자재 50%)를 보전해 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음.

- 또한 주로 선진국에서 채택하는 기술 투자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 혜택도 검토하고 있음. 이러한 직접 지원방식은 ▲세수제도의 건전성을 유도하고, ▲하이테크 기업의 발전을 장려하고, ▲전체적인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아직 중국이 받아드리지는 못하고 있음.

□ 과학연구기구 투자 장려 및 신기술산업 금융투자 지원

- 중국정부는 연구기구 투자, 위탁개발 투자 등으로 입은 손실을 다음회기 소득정산시 보전해주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IT 분야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벤처캐피탈 조성 장려 방안을 추진함.

3. 평가 및 시사점

□ 그 동안 중국의 하이테크 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수제도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 첫째, 세수우대정책에 있어서 중국정부는 그동안 직접적인 감세 제도를 운영하여 왔는데, 이 제도가 장기 기술개발을 필요로 하는 하이테크 산업에는 실제로 별 혜택이 없었다는 지적임. 즉 하이테크 기업의 장기 기술투자보다는 단기투자를 증가시키는 문제점이 드러남.
- 둘째, 현재 전 산업 부문에 일정하게 적용되고 있는 증치세 제도가 하이테크 산업에는 예외로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소득세 제도 역시 하이테크 기업의 R&D투자 촉진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임.
- 셋째, 세금 징수 절차에 있어서도 하이테크 기업에 한하여 전자결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 한편, 중국정부는 2000년 3월의 일부 디지털 상품의 증치세 반환 관련 통지를 시작으로, 동년 6월 《소프트웨어 산업과 IC회로 산업 발전 장려에 관한 통지》, 9월 《소프트웨어 산업과 IC회로 산업 발전에 관한 세수정책 문제와 통지》 등 하이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법규를 제정하고 있으나, 아직 시행

기간이 짧고 제도상의 미숙한 점으로 인해 가시적인 성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중국경제뉴스

1. 중국 WTO가입 후 5년 내 대외무역 및 외자도입 전망

- WTO가입에 따른 수입 충격이 2005년을 전후하여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고 白和金 거시경제연구원 원장이 중국발전포럼 제4기 年會에서 밝힘.
- 또한, 백원장은 “10차 5개년 계획”기간 중국 연간 수출 성장률은 6% 내외, 연간 수입 성장률은 10% 내외로 무역 흑자가 현저히 줄어들지만 “10차 5개년 계획” 전 기간 수출입은 기본적 균형을 이룰 수 있을 전망이다.
- 수출입 구조에 있어서 기계전기 제품 수출은 2005년까지 전국 대외무역수출 총액의 50%에 이를 전망, 최대의 변화로 꼽힘.
- 첨단기술제품 수출 비중은 20% 초과.
- 비교 우위를 유지하는 경방직 제품 및 일부 농어목축 제품도 수출 확대 잠재력이 있지만 그 비중은 줄어들 듯.
- WTO가입 후 3년 이내 각종 소유제 기업들이 모두 수출입무역권을 가지게 되니 비국유기업은 비교적 높은 수출입 성장 속도로 중국의 대외무역에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될 전망.
- 한편, 백원장은 2005년에 외상의 대 중국 직접 투자 규모는 1,000억 달러에 이르고 세계 FDI 유입량에 점하는 비중은 1998년의 4.5%에서 6.3%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골드만삭스의 예측의 대해 지나치게 높은 수치라고 평하면서 “10차 5개년 계획” 기간 500억 달러의 연간 외상 직접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주장함.(工商時報, 2001. 12. 7)

2. 경무위 주임, 내년도 경제무역정책 방향 언급

- 李榮融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주임은 전국경제무역회의에서 향후 경제무역위원회

의 사업방식 전환점을 다음과 같이 언급함.

- ① 대형 국유기업 중심에서 각종 소유제 기업을 대상으로 함.
- ② 행정적 심사비준 위주에서 거시통제, 양호한 환경의 창출과 감독 강화로 전환
- ③ 프로젝트 심사 중심에서 정보 제공과 감독관리로 전환
- ④ 구체적인 일 중심에서 전반적 의미가 있는 일로 전환

- 내년도 경제무역사업의 주요 목표로 전국 공업 증가액 성장률 9% 이상, 기술개조투자 성장률 10% 이상, 사회소비품 소매 총액 10% 내외, 기업 경제 효율 금년 수준 이상 등을 지적함.

- 2002년 경제무역사업은 8개 방면에서 전개하기로 함.

- ① 시장 수요에 의해 석탄, 유화, 야금, 건축재료, 방직, 제당을 비롯한 업종에 대한 총량적 조절통제를 통해 경제의 안정 운영과 시장 수급 균형을 확보함.
- ② 국유기업 개혁에 있어서 현대기업제도의 구축을 위해 규범화된 주식제 개혁을 추진하고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대규모 회사와 기업 그룹을 육성함.
- ③ 기업 기술 진보에 주력해 공업 구조의 최적화와 산업 고도화를 촉진함.
- ④ 현대 유통 시스템을 육성해 소비를 자극하고 내수를 확대함.
- ⑤ WTO담판 관련 약속을 지키면서 대응조치의 세분화를 서둘러 중국의 산업 안전을 보장함. 국제 관례에 부합한 수출입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WTO관련 경제무역 법규의 개혁을 가속화함.
- ⑥ 중소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평등한 경쟁환경을 창출함.
- ⑦ 시장경제 질서의 정돈과 규범화에 계속 주력함.
- ⑧ 기능의 진일보 전환과 효율 향상을 추진함.

-李주임은 또한 내년 6개의 새로운 국면을 형성하도록 경제무역사업을 개척해나갈 것이라고 함.

- ① 대기업이 주도하고 다른 규모의 기업들이 합리적으로 분업하고 조화로운 발전을 이루는 국면
- ② 공유제 위주로 하고 각종 소유제가 공평하게 경쟁하고 공동으로 발전하는 국면
- ③ 첨단 기술 산업과 전통 산업 간 서로 의존하고 공동 발전하는 국면
- ④ 질서 있는 기업 시장 진출 시스템이 구비한 국면

- ⑤ 생산과 유통, 국내 무역과 대외무역, 도입과 수출이 상호 촉진하고 유기적으로 결합한 국면
- ⑥ WTO 규칙에 부합한 법에 기초한 정부 행정과 기업 경영이 실행되는 국면
(經濟日報, 2001. 12. 7)